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61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의자 : 안도걸 · 민형배 · 손명수

양부남 · 정일영 · 정준호

전진숙 · 모경종 · 조계원

서삼석 · 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함)를 신고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 사업소 등을 방문하여 시설 ·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그러나 신고가 없는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사대상 기업 등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조달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이에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이하 “부당한 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①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제34조의2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
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생 략) <u><신 설></u>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u> <u>-----</u> <u>-----.</u>
② <u>제1항</u> 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u>④ 제1항 및 제2항-----</u> <u>-----</u> <u>-----</u> <u>-----</u> <u>-----.</u>
③ <u>제1항</u> 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u>⑥ 제5항-----</u> <u>-----</u> <u>-----</u> <u>-----.</u>
④ (생 략) <u>⑤ 제4항</u> 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u>⑥ · ⑦ (생 략)</u>	<u>⑦ · 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u> <u>-----</u> <u>-----</u> <u>-----.</u>

<신 설>

과 같음)

제21조의2(수요기관의 의무)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이하 “부당한 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별 칙) ① 제21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신 설>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를 하면 제34조의2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 <신 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① (생략)

<p>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 ----- ----- -----.</u></p>
---	---